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1년 2월 4일 (목)

CONTENTS

-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이슈브리프

(IB 2021-02)

CONTENTS

I.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 1

II.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 14

III.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 24

발행인: 지상욱

편집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윤식, 나경태

편집간사: 장경수

발행일: 2021년 2월 4일

발행처: 여의도연구원

인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이번 호(2월 1째주)는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미국의 외교안보라인업을 통해 한반도/대북정책을 전망하였습니다. 제2편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편에서는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를 분석해보고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제1편: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이윤식 정치외교안보실장)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관할하는 국무부 라인업을 보면, 장관에 토니 블링컨(59), 부장관에 웬디 셔먼(72),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성김(61), 그리고 북한 담당 부차관보에 정박(47)이 포진. 同 라인업의 특징은 과거 북핵/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을 중용했다는 것인데, 이는 시행착오 없이 바로 '대북 다루기'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이에 당초 '전략적 인내 2.0'이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대북접근법 전면 재검토가 발표되면서 향후 정세변화에 귀추가 주목됨

제2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제방훈 전략기획위원)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은 '19년 한 해만 약 20만 건이 확인, 860억원이 환수결정되는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임. 기재부는 '17년 7월부터 부정 수급 의심 징후를 포착하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최근 2년간 약 5,053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11,466건의 부정징후 의심 사례를 각 부처에 통보. 하지만 통보받은 부처는 약 1.5% 수준에 해당하는 172건만을 자체 적발하는 수준에 그침. 또한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별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확인.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제3편: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정창훈 前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장경수 선임연구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만큼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보궐선거가 60여일 남은 상황에서 전임 시장의 임기동안 △재개발 재건축 규제에 따른 서울시 주택가격 급등, △감염병 위기에도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 절대 부족, △소상공인, 자영업자 붕괴에도 서울시 지원대책은 미흡, △주민 의사 무시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고용세습 등의 실정을 분석함. 더불어 청년실업과 여성 성폭력 대책으로 △청년 지업사업 확대, △여성부시장제 신설 등을 제안함

II.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작성: 제방훈 전략기획위원 (jbhkkm@daum.net)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은 '19년 한 해만 약 20만 건이 확인, 860억원이 환수 결정되는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임. 기재부는 '17년 7월부터 부정 수급 의심 징후를 포착하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최근 2년간 약 5,053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11,466건의 부정징후 의심 사례를 각 부처에 통보. 하지만 통보받은 부처는 약 1.5% 수준에 해당하는 172건만을 자체 적발하는 수준에 그침. 또한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별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확인.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1.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현황

□ 매년 부처별 부정 수급 건수와 환수금액 급증 추세

-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범위 내 지자체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과정 중 지출증빙 미비, 집행오남용, 횡령 등 사회적 문제 발생
- 부처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4만건 부정 수급에 대해 350억원이 환수 결정, 2019년의 경우 20만건 부정 수급에 대해 860억원이 환수 결정 되었음
- 매년 부처별 부정 수급 건수와 환수 금액이 크게 증가 중인 가운데, 2020년 현황은 현재 부처별로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진행 중

〈표 II-1〉 2018~2019년 부처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 건, 억원

	부처명	환수결정 건수	환수 결정액	부처명	환수결정 건수	환수 결정액
2018	고용부	661	20.6	산림청	5	3.0
	과기부	5	18.4	소방청	1	0.0
	교육부	25	0.1	여가부	771	3.0
	보훈처	1,524	0.8	외교부	2	1.5
	국토부	27	10.4	중기부	1	0.3
	농림부	19	6.8	통일부	1	0.0
	문체부	7	1.9	특허청	6	22.1
	법무부	10	0.4	해수부	2	1.3
	복지부	37,786	258.1	환경부	3	0.2
	소계	40,856	349.0			
2019	고용부	95,293	492.8	법무부	4	0.03
	과기부	9	17.8	복지부	108,097	262.4
	교육부	23	0.3	산림청	6	0.2
	보훈처	935	0.6	산자부	11	17.6
	국토부	4	0.3	여가부	682	4.4
	국회	17	0.3	중기부	23	30.7
	기재부	8	0.1	해수부	606	11.5
	농림부	400	5.2	행안부	4	0.2
	문체부	15	17.9	환경부	15	0.2
	소계	206,152	862.6			

○ 부처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부처별 자체 및 감사원 감사, 부정수급 신고, 기재부의 부정징후 의심 통보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해 접수되며, 이에 대한 각 부처별 자체 적발 노력을 통해 확인 중

- 이 중 소관부처에 신고된 부정수급 신고 현황은 금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520건이 확인되었음. 매년 평균 173건 수준임

〈표 II-2〉 최근 3년간 소관부처에 신고 된 부정수급 신고 현황

부처명	신고건수(건)		
	'18	'19	'20.5월
고용부	20	24	14
농식품부	6	-	1
복지부	151	160	143
문체부	-	1	-
합계	177	185	158

2.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의심 징후 감시 시스템의 현주소

- 기재부 부정수급 의심 징후 통보에도 부처별 자체적발 실적 매우 저조
 -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에 근거해 '17.7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으로 2018년 사업부터 보조금 집행정보를 모니터링해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고 이를 부처 및 지자체로 통보 중
 -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통보받은 부처 및 지자체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하도록 하고 있음

〈표 II-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45조의 2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기재부는 2018년 사업을 대상으로 부터 실시한 모니터링에 따라 현재까지 국고보조사업에 약 5,053억원 규모 11,466건의 상당한 양의 부정 징후 의심 정보를 각 부처별로 통보
- 기재부의 이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전달받은 부처는 1.5% 수준에 해당하는 172건을 자체 적발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
 - '17년 집행보조사업에 대한 2018년도 모니터링의 경우, 기재부가 부처에 4,291건의 부정징후 모니터 결과를 통보했으나, 이를 통보 받은 부처는 0.4%에 해당하는 18건을 자체 적발하는 수준에 그침
- '18년 1월부터 '19년 6월 집행된 보조사업에 대해 기재부는 2019년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7,175건의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통보했으나, 이를 접수받은 부처는 단 2.1%에 해당하는 154건만을 자체 적발하는 수준에 그침

〈표 II-4〉 '17.7월부터 'e나라도움' 통한 모니터링 현황

(단위 : 건)

점검 연도	모니터링 대상	부정 의심사업 통보건수(기재부→부처)	부정수급 적발 건수 (부처 자체 적발)
2018년도 모니터링	'17년 집행 보조사업	4,291	18 (0.4%)
2019년도 모니터링	'18년 1월~'19년 6월 집행 조사업	7,175	154 (2.1%)
합계		11,466	172 (1.5%)

□ 대표적인 다섯 가지 패턴 부정징후 통보

- 기재부는 보조사업 신청자 중에서 비수급자를 걸러내 선정단계에서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부정수급 방지 기능을 구현 중이며, 보조금 실시간 집행관리 및 부정수급 징후 모니터링 후 일정 패턴을 탐지 중
- 기재부는 주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문제의 유형을 다섯 가지(▲가족간 거래 ▲급여성 경비 ▲지출증빙 미비 ▲집행오남용 ▲특정거래 관리)로 범주화해 부처별로 통보
- 세부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가 4,743건으로 가장 많고, 사망자에게 월급을 주는 등 인건비 부정 집행도 3,306건. 가족 회사에 일감을 준 ‘가족간 거래’도 2,024건(18%) 확인

〈표 11-5〉 최근 2년간 부정징후 의심사업 유형별 현황

부정징후 유형		추출사업수	부정징후 금액(원)
2018	가족간 거래	518	15,937,280,144
	급여성 경비	1,272	29,843,168,963
	지출증빙 미비	1,958	59,575,189,100
	집행오남용	83	387,836,628
	특정거래 관리	460	126,146,975,663
	합계	4,291	231,890,450,498
2019	가족간 거래	1,506	42,311,703,455
	급여성 경비	2,034	48,768,900,465
	지출증빙 미비	2,785	82,582,093,764
	집행오남용	539	1,733,436,020
	특정거래 관리	246	98,005,245,455
	자산관리	65	-
	합계	7,175	273,401,379,159

□ 국고보조금 부정 징후 모니터링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유일

- OECD 국가중에서 부정징후 모니터링 및 부처별 통보와 관련해 별도로 확인되는 사례가 없을 만큼 사실상 대한민국 사례가 유일
- 주된 사유로는 IT강국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보조금을 통한 정부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가 드물기 때문임
 - 디브레인(dBrain:디지털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 사례와 같이 대한민국은 전자정보 및 국가회계정보 시스템 구축면에서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동남아 및 스리랑카 등 국가들은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수준
 - 미국의 경우 정부재정에 대한 비리가 개입된 경우 사법부 판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등 시스템상 차이가 있음

3. 현행 국고보조금 부정 징후 모니터링의 문제점

□ 부정 수급 감시 통보 따른 부처별 자체 적발 미흡

- 보조금 반환 및 제재 등 조치사항에 대한 권한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 책임하에 관리
 -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과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30~36조, 참고2)
- 기재부의 시스템에 의한 부정수급 징후 감시와 부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보받은 부처별 자체적발률이 1.5%에 그치는 것은 각

중앙관서의 시정조치를 기재부가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

- 기재부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자체 적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45조의2」 위배 소지가 있음

〈표 II-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45조의 2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부처별 부정수급 사례 중 가족 간 거래 만연

- ‘가족간 거래’란 예컨대 학교에 배트와 글러브 등 용품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체부의 ‘연식야구 활성화’ 사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보조사업자로 야구협회가 선정되고, 동 협회에서 배트와 글러브를 구입하는 곳이 거래처가 되는데 이 협회장과 거래처가 가족인 경우를 말함
- 기재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은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정보에 포함된 인적사항을 대법원 등을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거의 전량 ‘가족간 거래’를 적발 중
 - ’19년 문체부는 보조사업자로 A협회를 선정해 1억원의 국고보조사업비를 추진, A협회가 물건을 구입한 거래처가 A협회장의 아들이었음
 - ’18년 과기부는 보조사업 대표자인 본인이 감사로 재직 중인 거래처 B기업 및 C기업과 거래한 5천9백만원이 확인돼 전액 환수처리

- 지난해 행안부 보조사업 대표자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거래처 D 기업과 거래한 4천8백만원이 확인되어 전액 환수처리됨
- 조사결과 부친의 업체는 과업 수행할 역량이 전혀 없는 업체였음

〈표 II-7〉 가족간 거래로 확인돼 환수처리 된 보조사업들 현황

소관부처	사업연도	부정징후 통보유형(자기 거래 및 가족간 거래)
과기부	2018	보조사업 대표자인 본인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거래처 B 기업 및 C기업과 거래한 내역('18.11월) 59백만원이 확인해서 환수처리했음
행안부	2019	보조사업 대표자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거래처 D기업과 거래한 내역('19. 6월) 48백만원이 확인됨.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과업수행역량이 있는 거래처였다고 소명을 했으나, 실제 확인결과 용역결과물을 제출을 했지만 부친이 운영하는 업체가 과업 수행할 역량이 없는 업체로 확인됐음.
여가부	2017	보조사업 대표자의 가족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내역('17.1월~8월) 15백만원이 확인됨. 보조사업에 직원을 채용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인력으로 남편을 채용해서 1천5백만원을 지급했음. 그러나 남편이 기안을 올리거나 메일을 주고받거나 사무실을 출입한 흔적 등 아무것도 소명하지 못해서 전액 환수처리
행안부	2018	보조사업 대표자의 모친이 운영하고 있는 거래처 F기업과 거래한 내역('18. 10월, 12월) 31백만원이 확인됨
산업부	2019	보조사업 대표자인 본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거래처 G기업과 거래한 내역('19. 6월) 44백만원이 확인해서 환수처리
농림부	2018	보조사업 대표자인 본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거래처 H 기업 및 I기업과 거래한 내역('18.9월~12월) 62백만원이 확인해서 환수처리
국토부	2017	보조사업 대표자의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거래처 J기업과 거래한 내역('17. 10월) 1.5백만원 확인

4. 감시 시스템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 e나라도움 부정징후 모니터링 개선

- 부처·지자체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와 부처·지자체의 합동 현장점검 정례화 추진
 - 수집한 사례 분석과 ‘e나라도움’ 사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존 모니터링 패턴에 대한 정교화 작업 후 이 결과를 다시 ‘21년도 모니터링에 적용하는 순환시스템 도입 검토
- 부처·지자체 자체점검 견인
 - ‘e나라도움’에서 추출한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통보 후 부처·지자체의 자체 점검기간(통보 후 45일 이내) 동안 자체 적발 이행을 공개하는 등 집중적인 자체 점검 견인

㉡ 부처 자체 적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부처의 자체 적발률 제고 방안 모색
 - 부정징후 의심사업 중 상당수 사업(또는 샘플링)에 대해 부처·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 실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자체 적발실적 보고율을 상향하는 방법 등
- 부처에 대한 기재부의 점검 및 권한 강화 관련 법적 근거 신설
 - 부처와 지자체가 보조금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집행률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기재부도 이를 알면서 묵인 방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가족간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

- 단, 해당 거래처만 수행할 수 있는 특허가 필요한 과업이거나 섬에 위치한 지형적 한계가 있는 특별한 경우 등은 예외적 허용

※ 책임 감수: 김창배 경제정책실 실장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